## 스포츠클럽 육성법안 (안민석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86 발의연월일: 2020. 6. 5.

발 의 자: 안민석 · 서영교 · 박 정

도종환 · 신현영 · 송갑석

박홍근 · 김민기 · 문진석

고용진 • 전혜숙 의원

(11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스포츠 강국을 넘어 모든 국민이 스포츠를 즐기는 스포츠 복지국가 로 나아가는 스포츠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함.

따라서 전 국민이 손쉽게 체육시설, 프로그램, 지도자를 접하도록 하여 체육복지를 향상시키고, 클럽 위주의 대회를 마련하여 체육계 선 순환 구조를 마련하고자 함.

이에 「스포츠클럽 육성법」에서 스포츠클럽을 정의하고, 스포츠클럽을 육성하기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스포츠클럽 등록 및 설치, 인력양성 방안 등을 규정하여 스포츠 선진국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(안 제2조, 제3조, 제5조, 제6조, 제8조 및 제20조등).

## 스포츠클럽 육성법안

제1조(목적) 이 법은 스포츠클럽의 설치와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육발전과 국민체육 복지 향상 및 지역사회 체육인재 육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1. "스포츠클럽"이란 「생활체육진흥법」 제2조제5호의 스포츠클럽을 말한다.
- 2. "스포츠클럽회원"이란 스포츠클럽의 시설이나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위하여 스포츠클럽에 가입하고 주기적으로 회비를 납부하는 사람을 말한다.
- 3. "스포츠클럽회비"란 스포츠클럽에 가입하는 자가 회원자격을 부여받는 대가로 스포츠클럽에 지불하는 비용을 말한다.
- 4. "스포츠클럽교습비"란 스포츠클럽의 프로그램을 수강하기 위하여 회원 등이 납부하는 비용을 말한다.
- 5. "스포츠클럽지도자"란 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득하고 스포츠클럽, 체육단체에 소속되어 회원 등을 지도하는 사람을 말한다.

제3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스포

츠클럽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-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시책수립과 스포츠클럽에 대한 안정적 인 지원을 위하여 스포츠클럽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 여야 한다.
- 제4조(다른 법률과의 관계) 스포츠클럽의 육성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따른다.
- 제5조(기본계획의 수립 등)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츠클럽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스포츠클럽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(이하"기본계획"이라 한다)을 5년마다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  -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스포츠클럽 육성의 기본방향, 정책추진체계, 재정확보 및 지원 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.
  -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기본계획의 수립·시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,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  -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을 관계 중 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, 누리집(홈페 이지)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.
- 제6조(집행계획의 수립·시행 등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(특별자치시장

- ·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은 기본계획에 따라 스포츠클럽 육성 등에 필요한 세부 집행계획(이하 "집행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- ② 제1항에 따라 집행계획을 수립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집행계획을 시행하기 전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- ③ 그 밖에 집행계획의 수립·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7조(발전위원회 등의 설립)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츠클럽의 발전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스포츠클럽발전위원회를,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소속으로 스포츠클럽 지역발전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.
  - ② 스포츠클럽발전위원회 및 스포츠클럽지역발전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·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  - ③ 스포츠클럽발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, 기능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, 스포츠클럽지역발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, 기능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.
- 제8조(스포츠클럽의 등록과 취소) ① 이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스포츠클럽은 제2항의 요건을 갖추어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.

-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에 필요한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- 1. 비영리법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에 준하는 단체일 것
- 2. 10명 이상의 스포츠클럽회원과 연간운영계획서를 보유하고 있을 것
- 3. 청소년 스포츠클럽회원을 보유하고 있을 것
- 4. 대표자 및 스포츠클럽회원의 대의기구가 있을 것
- 5. 정치활동에 관여하지 아니할 것(그 대표자가 국회의원, 지방자치 단체의 장, 지방의회의원을 겸하지 아니할 것을 포함한다)
- 6. 그 밖에 스포츠클럽 등록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-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스포츠클럽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 다.
- 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스포츠클럽을 등록한 경우
- 2. 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
- ④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14일 이내에 등록의 가부를 결정하여 통보하고 등록이 결정된 경우에는 누리집 등에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.
-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에 따라 등록의 가부를 결정할 경우에는 제7조의 스포츠클럽지역발전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한다.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
-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스포츠클럽을 등록하거나 취소한 경우 그

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- ⑦ 스포츠클럽의 등록 및 취소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9조(스포츠클럽 인증)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취약계층 지원, 전문선수 육성 등 공익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8조에 따라 등록된스포츠클럽 중에 공익사업을 수행할 수 있을 정도의 일정한 자격을 충족하는 스포츠클럽에 대하여 공인스포츠클럽으로 인증을 할 수 있다. 이 경우 인증기준과 방법, 인증 표식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한다.
  -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인증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.
  -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인증을 받은 클럽이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면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.
  - 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
  - 2. 인증받은 자가 인증서를 반납하는 경우
  - 3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
  -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제1호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스포츠 클럽에 대해서는 그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제10조(스포츠클럽회비 등의 징수) ① 스포츠클럽은 스포츠클럽회원에 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포츠클럽회비, 스포츠클럽교습

- 비, 시설 이용료 등을 받을 수 있다.
- ② 제1항에 따라 스포츠클럽회비 등을 받는 스포츠클럽은 스포츠클럽회원 등이 쉽게 볼 수 있도록 스포츠클럽회비 등의 내역을 누리집 및 스포츠클럽하우스 등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. 스포츠클럽회비 등의 정산 내역 또한 같다.
- ③ 이 법에 따라 등록된 스포츠클럽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른 체육단체의 시·군·구체육회에 가입 또는 가맹된 회원종목단체 및 가맹경기단체(이하 "상급단체"라 한다)에 회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본다.
- ④ 스포츠클럽회비 등의 사용과 정산, 상급단체에 납부할 회비의 비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11조(스포츠클럽지도자 배치 지원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라 등록된 스포츠클럽이 스포츠클럽지도자를 배치할 경우 예산을 지원하거나 생활체육지도자로 하여금 순회지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.
  - ② 제1항에 따른 스포츠클럽의 지도자 배치 및 지원 기준과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12조(준수 사항) ① 스포츠클럽 운영자는 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2조제1항 각 호와 제24조제1항의 준수 사항 및 안전·위생 기준을 지켜야 한다.
  - ② 스포츠클럽을 이용하는 자는 제1항의 안전 위생 기준을 따라야

한다.

- ③ 스포츠클럽 운영자는 스포츠클럽을 이용하는 자가 제1항의 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스포츠클럽 이용을 거절하거나 중지하게 할 수 있다.
- 제13조(보험 등의 가입) 스포츠클럽 운영자는 스포츠클럽의 운영과 관련하여 스포츠클럽에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.
- 제14조(학교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) ① 「초·중등교육법」과 「고등 교육법」에 따른 학교의 장은 학생의 학습권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스포츠클럽에 학교체육시설을 개방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국 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체육시설의 보수 및 유지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
  - ② 제9조에 따라 인증받은 스포츠클럽은 체육활동 지도 및 각종 대회의 개최 등을 통해 지역 주민의 체육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. 이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의 체육활동 지원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
  - ③ 제1항에 따라 개방된 학교체육시설을 스포츠클럽에서 사용하다 발생한 사고 등에 대하여 학교는 면책하며, 스포츠클럽은 학생의 안 전과 학교시설 훼손방지 등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. 다만, 시설을 훼손한 경우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.
  - ④ 학교체육시설을 사용하는 스포츠클럽은 「학교체육 진흥법」에

따른 학교스포츠클럽과 학교체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 협력하여 야 한다.

- 제15조(선수육성 지원 등) ① 스포츠클럽은 지역체육발전을 위하여 우수한 인재를 발굴·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다.
  -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을 지원받거나 명칭 사용 등의 후원을 받아 대회를 개최하는 자는 스포츠클럽회원들이 스포츠클럽 소속으로 대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. 국가대표 선발 전 및 지방자치단체 대표 선발전 또한 같다.
  - ③ 제2항에 따른 대회를 개최하는 자는 대회 실적을 관리하고 스포 츠클럽회원이 실적 증명서 발급을 요청할 경우 발급하여야 한다.
- 제16조(스포츠클럽 지원 등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클럽의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체육시설을 우선 사용하게 하거나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 다만, 제9조에 따른 인증을 받지 못한 스포츠클럽은 지원을 배제할 수 있다.
  -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클럽의 발전을 위하여 스포츠클럽 상호간의 교류전을 비롯한 종목별 리그대회 등을 개설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.
  - ③ 국가는 「부가가치세법」 제26조제1항제6호에 따라 스포츠클럽 교습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수 있다.
  -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제9

조에 따라 인증받은 스포츠클럽에 위탁할 수 있다.

- 1. 생활체육프로그램 등 주민체육복지 관련 사업
- 2.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
- 3. 학교운동부 및 직장운동경기부 육성 관리
- 4. 체육 관련 방과후 사업
- 5.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와 학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-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9조에 따라 인증받은 스포츠클럽이 해당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공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22조 또는 제27조에도 불구하고 무상 제공하거나 관리위탁하게 할 수 있으며, 다음 각 호의 단체(해당 단체의 지역단체,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를 포함한다)가 주관하는행사와 같은 수준으로 이용료를 감경할 수 있다.
- 1. 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33조에 따른 통합체육회
- 2. 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
- ⑥ 체육단체는 스포츠클럽 전담인력을 배치하거나 스포츠클럽지원 전담조직을 설치하여 스포츠클럽 발전을 위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.
- ① 그 밖에 스포츠클럽에 대한 지원 내용과 범위,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17조(실태조사)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츠클럽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기본계획 등을 효율적으로 수립·추진하기 위하여 스포츠

클럽의 활동현황 및 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다.

-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스포츠클럽 또는 관련 기관·단체에 대하여 자료 등을 요 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스포츠클럽 또는 관련 기관·단 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.
- ③ 그 밖에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.
- 제18조(종합정보시스템 구축·운영)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츠클럽 과 관련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스포츠클럽 간의 협력기반 구축 및 스포츠클럽 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·운영하여야 한다.
- 제19조(우수사례 발굴 및 포상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클럽 발전에 기여한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포상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- 제20조(권한의 위탁) 이 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 단체의 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체 육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.
- 제21조(개선명령 등)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선명령을 내려야 한다.
  - 1. 제10조제1항에 따른 스포츠클럽회비 등의 부정한 사용 및 제3항

에 따른 체육단체 회비 미납부

- 2. 제11조에 따른 체육지도자 자격 미보유자 배치
- 3. 제12조에 따른 준수사항 및 안전위생 기준 위반
- 4. 제13조에 따른 보험 미가입
- 5. 제15조제2항에 따른 대회 출전 미보장 및 제3항에 따른 실적 증명서 미발급
- 6. 제17조에 따른 실태조사 자료요청 거부
-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시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이 법에 따른 지원을 거부할 수 있다.
-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 육관광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·징수한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